

○○○검찰청

주소:

전화:

팩스:

(사건번호)

수 신 자

귀하

제 목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

아래 사람에 대해 . . . (죄명) 사건으로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검찰청 성명/직급

(서명 또는 인)

신 상 정 보 공 개 대 상 자	성 명	
	주 민 등 록 번 호	

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위 피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(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6항, 「형사소송법」 제405조).